

충남 교통체계진흥화사업 발전방향 세미나

주최 · 주관 : 충남발전연구원

일시 : 2015년 4월 29일(수) 10:00~12:00

장소 : 충남발전연구원 1층 회의실

진행순서

10:00~10:10

개회 및 참석자 소개

10:10~11:10

Topic 1 : 교통체계진흥화사업의 이해

이주일 실장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Topic 2 : 교통체계진흥화사업의 국비 확보 사례

류창남 박사 (전북도청)

Topic 3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소개

김원철 박사 (충남발전연구원)

11:10~11:50 토론 및 질의응답

11:50~12:00 폐회 및 정리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추진의 이해

2015.04

기술표준센터 / 컨설팅실 / 실장 이주일

1. 지능형교통체계(ITS) 소개

1. ITS란?

2. ITS 서비스 분야 및 기대효과

3. ITS 시스템 유형



I. 지능형교통체계(ITS) 소개

1. ITS란?

-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전자/제어 및 통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 자동화 하고 교통정보를 수집/처리가공/제공함으로써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1. 지능형교통체계(ITS) 소개

2. ITS 서비스 분야 및 기대효과



ITS 서비스 도입 기대효과

효율성 측면

- 전국 적용시 혼잡/사고/물류비용절감 (11.8조원/년)
- 평균통행속도 15~20% 증가
- 도로건설 예산의 1% 투자로 교통혼잡 20% 감소

안정성 측면

- 주요 기관의 센터 구축에 따른 실시간 소통정보 제공
- 사고위험요소 경고, 돌발상황관리, 과속단속 등 실시간 교통상황 모니터링

편의성 측면

- 전국 시내버스 93%, 정류장 13% 등에 버스정보제공
- 교통카드 이용율 96% 하이패스 단말기 620만대 보급(52%)
- 교통수단 이용, 접근성, 여행의 편리성 제공

환경성 측면

- 연료소모와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 녹색교통체계 실현
- ITS는 '20년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12% 담당

일자리 창출/신성장 동력

- 국내 산업에서 13.8명/10억원의 고용효과 발생
- 해외 ITS 사업수출 증대
- IT, 자동차, 건설, 통신 등의 다양한 산업과의 동반성장 파급효과가 큼

**출처 : 자동차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ITS) 계획 2020, 국토교통부, 2012.6

II. 기본계획 수립 필요성

1. 기본계획 수립 법적 근거
2. 주요 수립 내용
3. 수립 절차



II. 기본계획 수립 필요성

1. 기본계획 수립 법적 근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법률 제12246호)

제73조(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육상·해상·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이하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목표 및 기본 방향
2. 교통서비스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3. 육상·해상·항공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4. 지능형교통체계의 연구·개발, 산업화 및 표준화
5.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재원

6. 그 밖에 교통 관련 제도의 개선 등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제3호만 해당한다)은 육상·해상·항공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계획(이하 "분야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2. 철도교통 분야
3. 해상교통 분야(항만을 포함한다)
4. 항공교통 분야(공항을 포함한다)

⑤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분야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교통체계계획 수립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및 분야별 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지역에서 제73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전에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련 교통시설의 관리청, 관계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 분야가 포함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에게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등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도지사에게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안을 제출받으면 해당

ITS 기본계획 수립 법적 근거

제73조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의 수립

-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
-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재검토 및 정비

제74조 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의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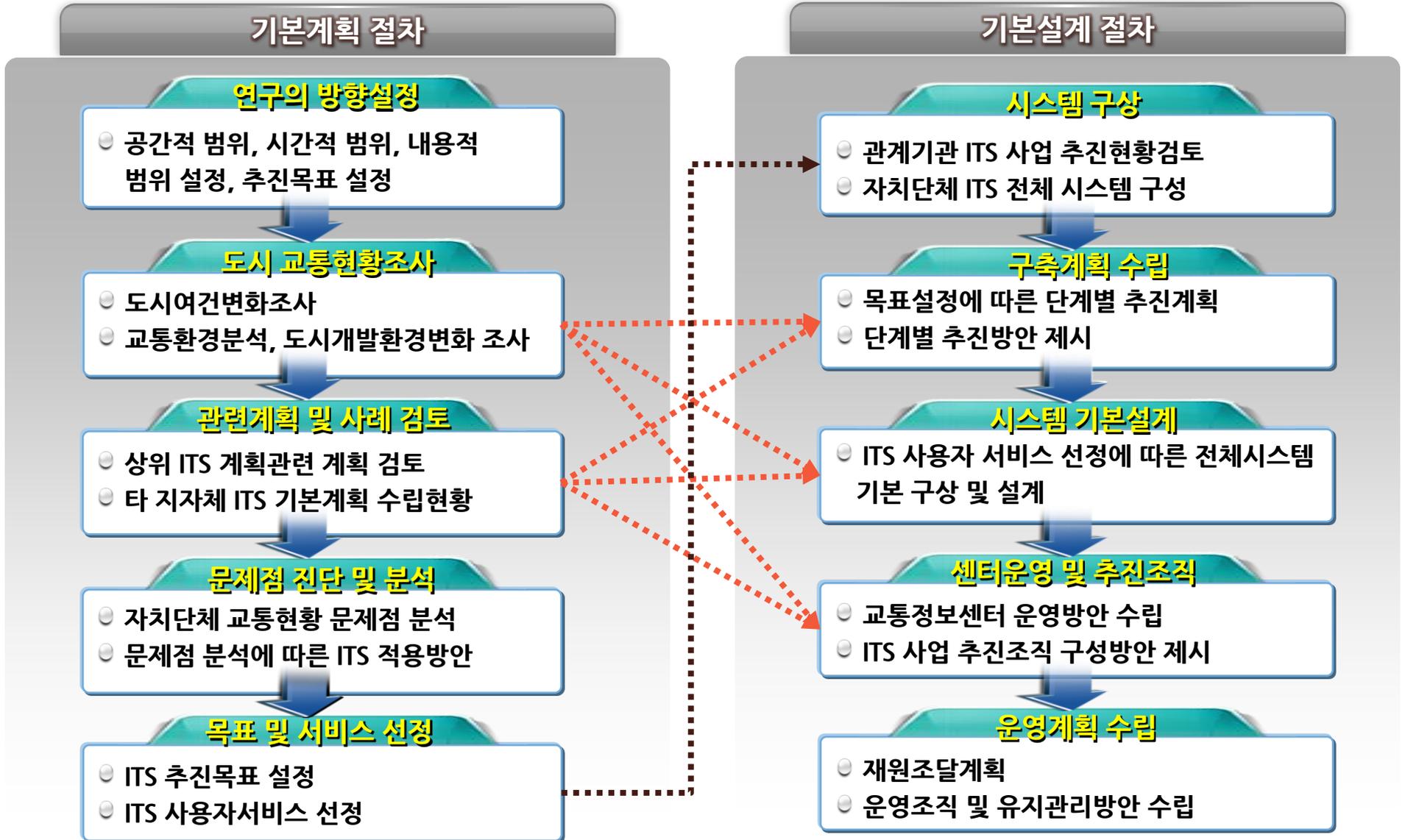
- 시도시자는 해당 지역의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다만,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전에 지능형교통체계 지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 ITS 기본계획 수립 연혁

-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1, 2000. 건설교통부
-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20, 2011.12. 국토해양부
 - 육·해·공 통합 교통체계지능화 계획(11~20)
-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계획 2020, 2012. 국토해양부
 - 자동차·도로교통분야 지능형교통체계(ITS) 계획 2020

II. 기본계획 수립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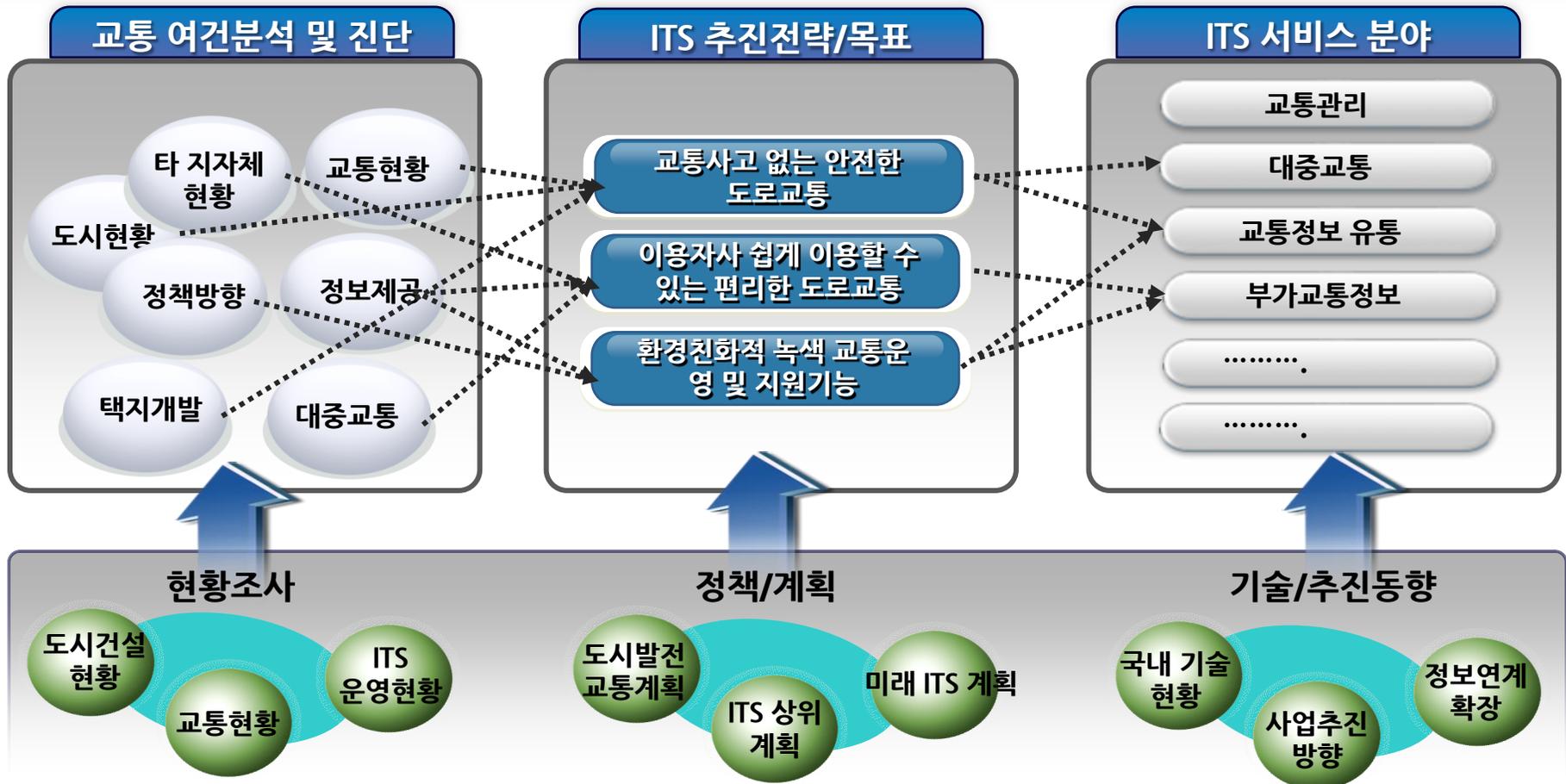
2. 주요 수립 내용



II. 기본계획 수립 필요성

2.1 ITS 서비스 도출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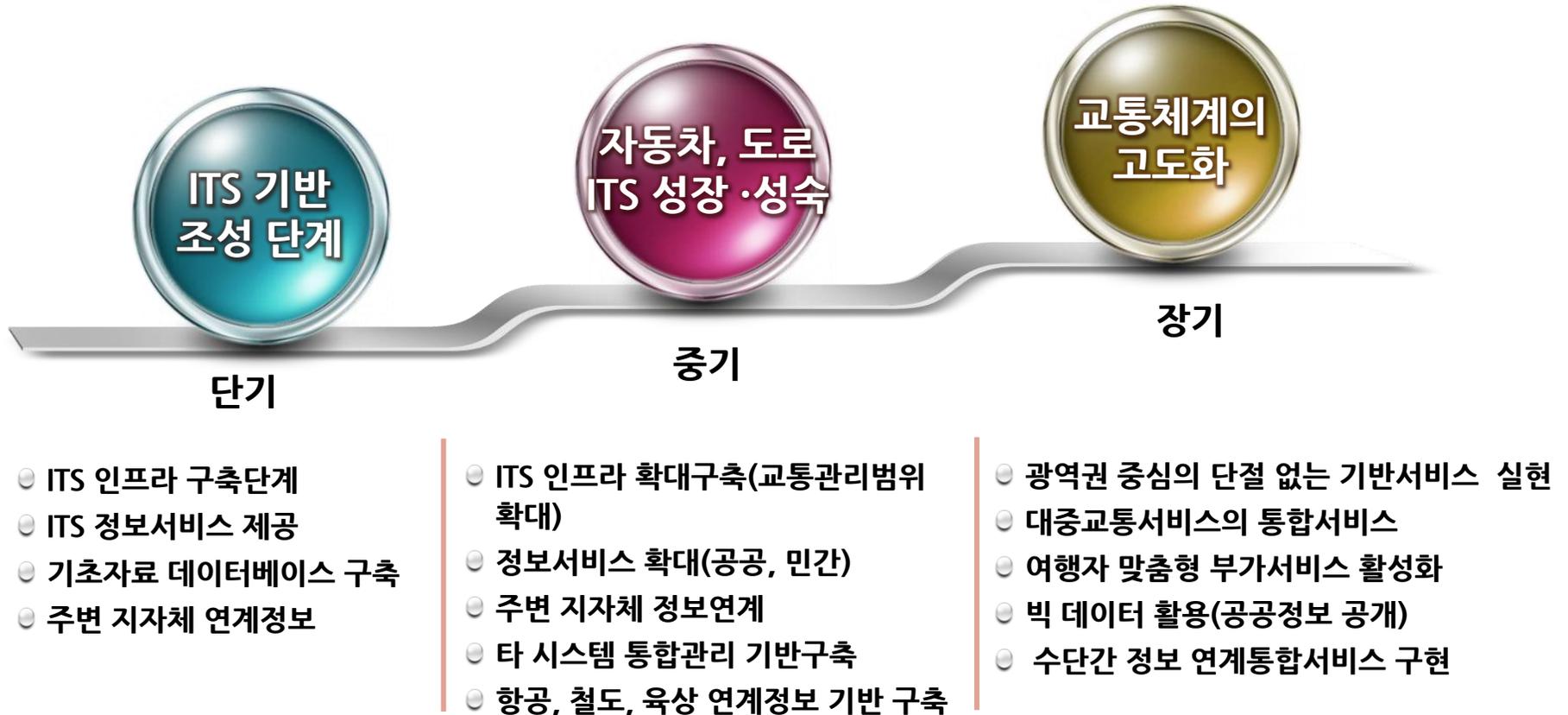
- 지자체 도시 여건 변화, 도로 교통망 특성, 택지개발 사업추진 현황 등을 고려한 ITS 서비스 도출
- 국가 ITS 기본계획, 차세대 ITS 서비스 계획 등의 검토를 통한 반영사항 도출
- 국가 ITS 표준, 공무원, 전문가, 일반시민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서비스 도출



II. 기본계획 수립 필요성

2.2 ITS 단계별 추진전략(안)

- 지자체 도시에 특화된 실천 가능한 목표수립
- 단기.중기.장기계획에 따른 지속적 추진방향 설정
- 국가 ITS 계획의 목표년도에 부합되도록 하며, 세부 계획은 지자체 특성에 맞게 재설정



II. 기본계획 수립 필요성

2.3. ITS 기본설계 전략

- 도시여건변화 및 특성에 맞는 시스템 구축
- 국가 표준준수
- 시스템 호환성/확장성/유지관리 용이성 고려

1. 시스템 구축전략

5. 물량 및 예산

- 현장/센터시스템 물량산출
- 단계별 물량 및 예산계획 수립
- ITS 표준품셈을 근거로 한 적정예산계획

2. 현장시스템 설계

4. 추진조직 및 운영관리

- ITS 사업 추진 조직구성방안
- 센터 운영관리방안
- 센터 유지관리방안
- 특별교통상황, 돌발상황 발생에 따른 대응체계

3. 센터간 연계/통합

- 현장 적용을 위한 시스템별 기술검토
- 시스템별 장/단점 분석
- 적용 가능한 시스템 도입
- 물리/논리/사업 아키텍처 설계 (ITS 아키텍처 V2.0 적용)

- 하드웨어 공간배치 및 센터 규모 적정성 검토
- 주변기관, 유관기관(국도청, 철도, 항공 등) 정보연계

II. 기본계획 수립 필요성

2.4 시스템 물량 산출 방안

- ITS 시스템 물량산출은 ITS 서비스 도출에 따른 물리적/논리적 아키텍처 설계를 기반으로 함
- 물리적 구성요소가 동일 또는 유사시 효율적인 역할/기능을 분담
- 각 서브시스템 구현에 필요한 정보는 상호간 연계관계를 파악하여 산출
- 각 단위시스템의 특성에 맞는 기능과 용량산정을 통한 물량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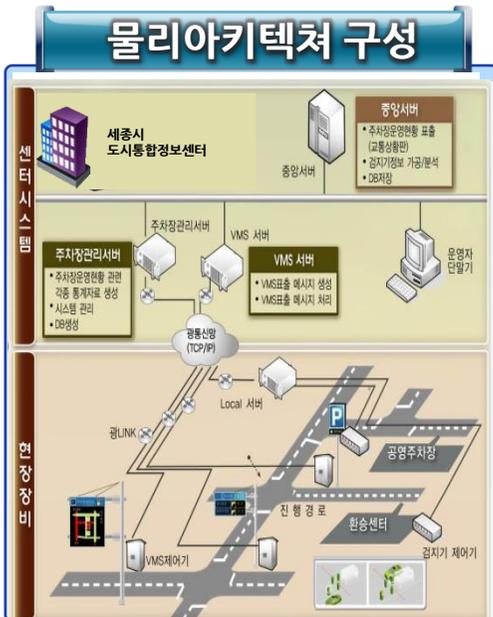
중요
고려사항

요구사항 반영
(전문가/공무원)

교통특성
현장지점환경

재원조달
가능성

타 지자체 사업
분석(벤치마킹)



물리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각 시스템별
구성요소 도출

물량 산정 절차

센터형 구성요소
(center-type Component)

도로 장치형 구성요소
(Roadside-type Component)

차량 장치형 구성요소
(Vehicle-type Component)

여행자 장치형 구성요소
(Traveller-type Component)

물량 산정 절차

시스템 선정

현장/센터시스템 검토

장비의 중복성 검토

시스템 물량(센터/현장) 산정

지지차 ITS 물량제시

사업비 선정

II. 기본계획 수립 필요성

2.5 소요예산 산출 및 자원조달방안

소요예산 산출절차

실천 가능한 시스템 규모 및 예산산출

구축비

단위 시스템별 설치위치 선정

단위 시스템별 필요 물량 집계

단위 시스템별 필요장비 구분
(센터장비+현장장비)

단가적용, 소요예산산정

운영관리비

사업관리단 구성

사전/사후평가

센터 및 장비운영비

유지관리비

운영관리비 추정액 산정

총 소요예산 산출

- ITS 표준품셈 단가산정 적용
- 시스템 구축 소요예산, 센터 구축비, 운영비로 구분

재원확보 방안

ITS 구축을 위한 재원확보방안

중앙정부국고지원방안

국토교통부

- 광역버스정보시스템사업 계획지침
- ITS자치단체국고보조 외

경찰청

- 도시지역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UTS)

중앙정부국고지원방안

ITS 관련 민간투자

- 정보수집 인프라 민간투자
- 정보제공분야 민간투자
- 민간투자에 따른 행정적/제도적 지원방안
- 민간투자 자원 비율 검토

ITS 구축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제시

II. 기본계획 수립 필요성

2.6 정보연계 방안

- 인접도시,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정보를 연계수집(ITS 국가교통정보센터, 한국도로공사, 국토관리청)
- 기존 시스템(U-City, 방범CCTV, ITS 센터) 정보, 철도, 공항, 고속/시외버스 등 수단간 정보 연계
- 기타 유관기관(경찰서, 교통방송국, 소방방재센터, 기상청 등) 정보 연계
- 관련 유관기관 정보연계 (정보연계 내용, 연계주기, 제공 대상 등의 기능정의)
- 정보연계는 국가 ITS 기술기준 적용

2.7 ITS 운영 조직 구성방안

- 지자체 ITS 추진을 위한 전문화된 조직구성 필요
- 교통정보센터 내 ITS 운영 관리를 위한 운영방식, 운영 조직 방안 제시

자치단체 행정조직도 검토

지역개발과

교통관련부서

도시건축과

치수방재과

도로계획담당

도로관리담당

교통행정담당

교통안전담당

도로시설담당

자동차관리담당

- ITS 구축사업 및 운영관리를 위한 추진 조직 구성 필요
- 타 지자체 ITS 추진조직, 센터운영 조직 현황분석 및 전문가 의견을 통한 최적의 구성방안 제시

II. 기본계획 수립 필요성

3. 승인 및 고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법률 제12246호)

제73조(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육상·해상·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이하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목표 및 기본 방향
2. 교통서비스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3. 육상·해상·항공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4. 지능형교통체계의 연구·개발, 산업화 및 표준화
5.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제원

6. 그 밖에 교통 관련 제도의 개선 등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제3호만 해당한다)은 육상·해상·항공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계획(이하 "분야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2. 철도교통 분야
3. 해상교통 분야(항만을 포함한다)
4. 항공교통 분야(공항을 포함한다)

⑤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분야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교통체계계획 수립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및 분야별 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지역에서 제73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전에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련 교통시설의 관리직, 관계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 분야가 포함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에게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등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도지사에게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안을 제출받으면 해당

ITS 기본계획 승인

제74조 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의 수립

-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안을 제출**
-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 간의 연계성 및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등에게 그 **계획안을 조정할 것을 요청**



ITS 기본계획 고시

제74조 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의 수립

- 시·도지사 또는 시장 등은 제5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확정·고시**하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Ⅲ. 구축사업 추진절차

1. 국고보조사업
2. 구축사업 추진 절차



III. 구축사업 추진 절차

1.1 국고보조사업

-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에 자치단체 ITS 사업 및 교통정보 연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
- 국고보조사업 : 교통체계지능화 사업(ITS) 50% 지원 ,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30~40% 지원
- 수요 조사 후 사업계획서 제안 및 평가를 통하여 국고보조 대상지자체를 선정함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법률 제12246호)

제76조(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분야별 계획 및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에 따른 소관별 지능형교통체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별 지능형교통체계의 시행계획을 받은 때에는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에 따라 그 내용을 종합·조정하여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이하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에 따라 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의 구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8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상·항공 교통 분야 전국단위교통정보의 수집·분석·관리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교통정보의 보급·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이하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국단위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관리 및 제공하기 위하여 육상·해상·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권역 차원의 교통정보를 수집·분석·관리 및 제공하는 권역별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이하 "권역교통정보센터"라 한다)를 구축·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권역교통정보센터는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와 교통정보를 상호 연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자가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소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정보를 수집·분석·관리 및 제공하기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이하 "지역교통정보센터"라 한다)를 구축·운영하는 경우에는 권역교통정보센터 또는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와 교통정보를 상호 연계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의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 간 교통정보의 연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 권역교통정보센터, 지역교통정보센터의 구축·운영 및 교통정보의 연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고보조사업 지원근거

제76조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등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능형교통체계의 **시행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에 따라 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0조 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의 구축 등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 간 교통정보의 연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III. 구축사업 추진 절차

1. 구축사업 발주 전 사전 업무

- 국고보조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 후 사업의 발주에 앞서 다음과 같은 사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사업관리단 선정

- ITS 사업의 발주처가 구축하고자 하는 구축사업의 종합적 관리 및 대행 (필요시 추진)
- 사업관리용역 또는 감리용역 추진
- ITS 훈령(사업관리단 추진 근거)

발주방식 결정

- 조달청 발주 : 조달청에서 발주를 위탁하여 평가를 포함한 업무를 대행(수수료 발생)
- 자체발주 : 지역업체의 참여 활성화가 가능하며, 지자체가 주관하여 발주 및 평가과정을 수행

공고방식 구분

- 용역 및 물품 : 분야별 인력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적합한 계약방식(협상에 의한 계약)
- 시설공사 :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는 계약방식(실시설계 필요)

기타 진행 사항

- S/W 분리발주 대상 및 구매방법 확정
- 계약심사 진행 : 도, 지자체 감사실
- 정보화 사업 협의조정심의, 국가보안성 심사
-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III. 구축사업 추진 절차

2.2 구축사업 발주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관리단 선정 및 구축사업 발주, 계약방식 확정 후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함

제안요청서 및
입찰안내서 작성

- 구축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 국고보조사업계획서내용 반영, **유관기관 사전 중복성 협의(국도청→필수사항)**

산출내역서 작성

- 제안요청서기반 물량내역 및 예산산출내역 작성 필요
- **ATMS** 구축사업의 경우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내역 산출(실시설계 산출물 국토부제출)

발주전
사전 행정처리

- 정보화사업 협의조정 및 국정원 보안성 심사완료
- ATMS 경우 지방국토관리청 정보연계 및 장비설치지점 중복 협의

발주 및 사업자
선정

- 조달청 또는 자체 공고
- 기술협상(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일 경우)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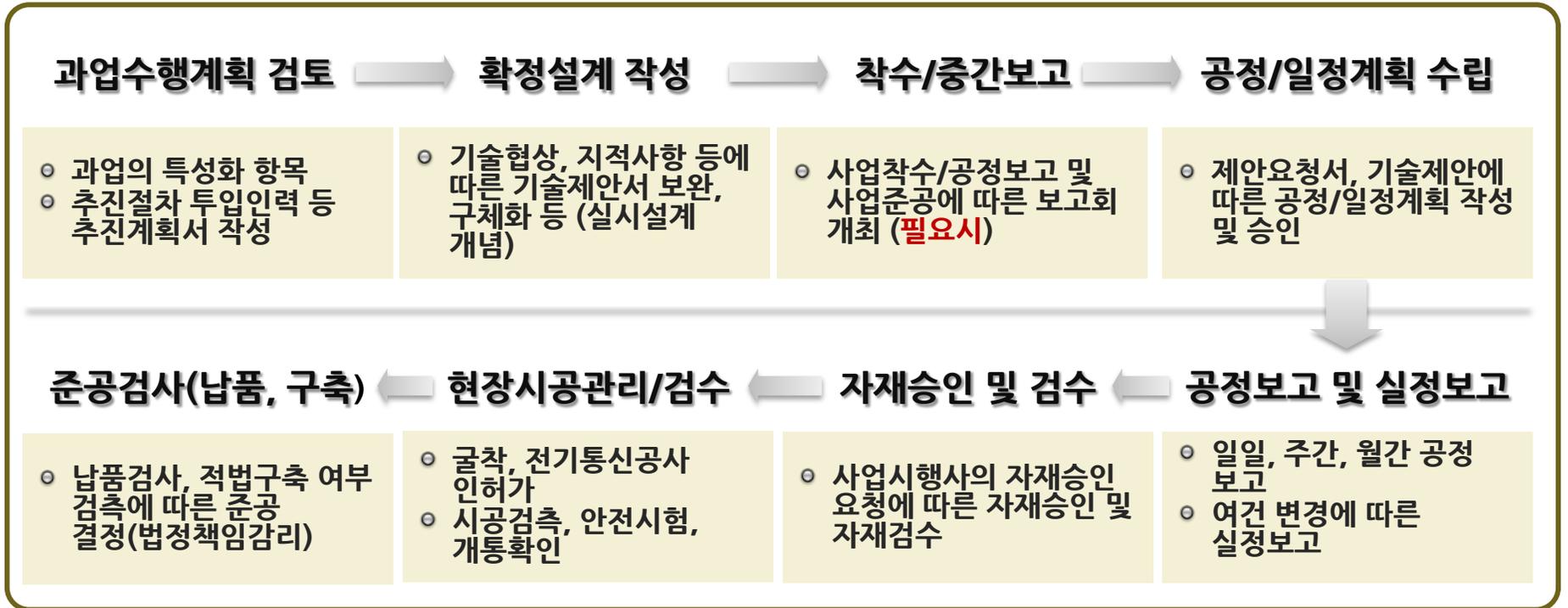
시공사 계약 및 착수

- 계약서류 및 착수계 적정성 검토
- 과업수행계획서 검토

III. 구축사업 추진 절차

2.3 사업수행 절차

- 시공사에서 제출된 과업수행계획에 의한 의한 공정계획 및 관리, 확정설계서 작성관리, 품질관리, 시공관리, 인허가 관리, 안전관리 활동 등을 수행 (**사업관리단 및 감리단과 공동 수행**)
- 필요시,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각종 보고회 및 필요에 따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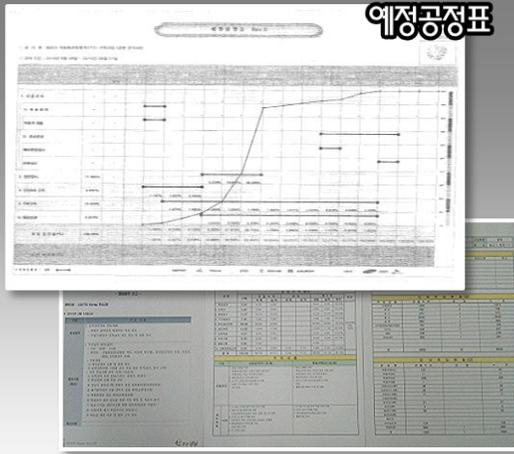


III. 구축사업 추진 절차

2.4 주요 단계별 점검사항

공정 관리

예정공정표



- 공정 계획 : 수행조직, 품질계획 관련 과업수행계획서 및 예정공정표가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적정 작성여부 검토
- 공정 관리 : 예정공정표에 의거 공정관리, 리스크 관리, 현안사항 관리 등

품질관리

공장검수



- 사업에 투입되는 부속, 품목의 일체를 사업시공사의 자재승인요청에 따라 자재공급원 승인, 공장검수, 자재검수, 반입검사 등을 시행

안전관리

공사중 교통처리 계획



- 시공사 및 작업인원, 시민등에 대한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시 취하도록 함

III. 구축사업 추진 절차

2.5 진행단계 점검 사항

- 사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상황에 대하여 필요시 국토교통부에 보고 및 승인 절차를 통해 추진함

사업 진행현황 보고

- 계약 체결 및 착수 보고 : 사업자 선정관련 계약체결 보고(계약서, 내역서 등)
- 공정 및 집행실적 보고 :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진행현황 정기보고

설계변경

- 실시설계에 따른 사업 추진 중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국토교통부의 사전 보고 후 승인을 얻어 추진
- 설계변경의 필요성, 변경사항, 변경내역, 변경도면 등 제출

사업 이월 보고

- 국비지원사업예산 및 사업기간 이월시 보고 및 승인
- 매년 12월

표준 적용 시험

- [기본교통정보교환기술기준] [대중교통정보교환기술기준] 준수
- 표준적용검증 시험을 실시하여 구축 시스템의 ITS 기술기준에 적합여부를 평가 및 판정하기 위함

유지관리 체계 마련

- 준공 전 교육을 통한 안정적인 유지관리 환경 구축
- 사용자 매뉴얼 및 유지관리 지침서 등 제작

III. 구축사업 추진 절차

2.6 준공단계 점검 사항

- 사업 시행 후 시스템 안정화 및 품질확보를 위한 시험운영 및 시스템 정상작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단위/종합시험, 시스템 성능 품질을 평가하는 성능검증평가 등을 실시함

성능평가 (ITS 시행지침)

- 준공 전 성능평가 시행으로 사업 품질 확보와 S/W 및 장비에 대한 안정화 테스트
- DSRC RSE, VDS, AVI 등 정보 수집 장비 성능평가

표준 노드/링크 갱신

- ITS 표준노드-링크구축운영지침 준수하여 준공 전 표준노드-링크 현행화 (국토교통부 노드/링크 관리시스템 입력 및 승인)

효과 분석

- 사전/사후평가 시행을 통한 정성적, 정량적, 경제성 평가수행 (ITS 훈령 근거)
- 사업관리단 또는 위탁용역수행

완료보고 및 국비정산

- 구축사업의 준공에 따른 완료보고서 제출 (준공검사조서 첨부)
- 국고보조금 정산(집행잔액 및 이자)보고 및 납입고지서 발부 요청

기타

- 준공 후에도 시스템 운영현황 등 정기 보고
- 기간별/장비별 장애율, 유지관리 점검대응사항, 센터운영 특이사항 등

감사합니다.



국비확보 전략 및 사례

- 목 차 -

1. 도시광역교통정보시스템(UTIS) 구축 사업 : 경찰청
2.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도입사업 : 지역발전위원회
3.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 국토부
4.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 농림부
 - 고창군 택시형 DRT
 - 완주군 로컬푸드형 순환버스
5.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구축사업 : 국토부

전라북도 물류교통과
류 창 남

전주권(전주·완주,군산,익산,김제) 사업계획 요약 보고서

1. 도시의 특성

- 전주권 지역개발로 인한 인구 및 자동차 등록대수가 꾸준한 증가 추세임.
 - 인구현황: 1,412,658명(2012. 10월), 자동차 등록대수: 747,946대(2012. 10월)
 - 중심생활권인 전주, 군산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인구증가율의 10배에 달함.
- 전주권이 하나의 동일 생활권 형성으로 인접 도시간 교통소통이 극히 많음.
 - 전북 총통행량의 64.4%(총통행량 262,855통행/일, 4개시 통과 통행량은 169,183통행/일)
- ITS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현황(ITS 개별 구축하여 교통정보 수집·제공)

전주시(1996~2012)	군산시(2006~2012)	익산시(2007~2011)	김제시(2012~2013)
· ITS, BIS, ATMS · 통합관제센터구축	· ITS, BIS, ATMS · 통합관제센터구축	· ITS · 통합관제센터구축	· ATMS 예정 · 통합관제센터구축

2. 사업 추진의 필요성

- 도심지역에 집중투자된 지자체별 ITS 운영으로, 교통량이 많은 광역적 교통정보 부재
 - 전주·완주통합, 혁신도시건설, 새만금사업등 도시 팽창에 대비한 광역교통정보기반 구축 필요
- 광역교통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업중복 최소화로 사업비용 절감과 정보관리 효율 극대화
- 전북 전체 지자체간 통행량의 64.4%가 전주권역에서 발생 : 전주권역 통합시스템 구축 필요



3. 추진 계획

- 추진목표: 전북 주요생활권인 전주·군산·익산·김제지역 광역교통정보서비스 제공
- 추진체계 : 4개 지자체·경찰서 UTIS사업 T/F팀 구성(협약완료)



○ 사업비: 22,500백만원 / 사업기간: 2013 ~ 2015년

구 분	1년도	2년도	3년도	합계
단 계	· 기본계획 수립 · 실시설계/공사발주	· 공사시행	· 공사준공/시험운영 · 효과평가	-
사업비	620백만원	10,940백만원	10,940백만원	22,500백만원

- 전주권 통합 광역교통정보시스템 구축으로 4개 지자체 센터비용 절감
- 국비 지원 부족시 총사업비의 10% 4개 지자체 자체예산 확보(예산부서 협의 완료)

4. 기대 효과

- 전주권을 하나의 광역교통정보망으로 구성하여 지역간 교통정보 단절구간 해소
- 지자체별 기 구축 운영중인 ITS 및 통합관제센터 활용한 사업효과 극대화 추진
- 광역교통정보의 이용자 맞춤형 정보제공 확대로 통행속도 증가 및 교통량 분산
- 교통소통 환경 개선으로 혼잡시 발생하는 환경오염 최소화와 에너지 소모 절감

5. 운영 방안

- 전주권 광역중앙교통정보센터 운영으로 유지보수 비용 최소화와 관리 효율화 도모
 - 관리주체 : 전주권 광역교통정보센터(전주시 ITS)
 - 유지보수 : 전문기관 선정을 통한 최적의 무중단 시스템 운영
 - 예산확보 : 4개 지자체 T/F팀 구성과 업무협약으로 유지보수비 분담(협의완료)
- 전북도청, 전북지방경찰청, 전주권 지자체, 관할 경찰서의 사업추진 T/F팀 구성 완료 및 업무 추진 협약 완료(2012. 12. 28)

6. 특별 추진사항

- 전주권역 통합 시스템 구축으로 사업예산 절감 및 사업 효율성 극대화
 - 전주시에 통합교통정보시스템 구축하여 각 지자체별 센터 구축으로 인한 중복비용 절감: 50억원
 - 통합시스템 운영으로 지자체간 연계로 인한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유지보수 가능
- 방법 차량번호인식 CCTV 및 BIS 정보를 활용한 교통정보 수집 및 가공
 - 경찰청 차량번호인식시스템과 BIS 정보 등을 연계하여 교통정보 가공 : 외곽지역 신뢰도 향상
- 기존 ITS 운영중 또는 신설 시설물의 UTIS 광자가망 활용한 통신비 절감 도모
 - 신호제어기, 방법·도로소통용 CCTV 등
- 각 지자체 재난시스템과 정보연계 활용
 - 교통흐름관찰용 CCTV 및 실시간 도로소통 현황을 연계하여 폭우, 폭설 등 재난사항에 대처
 - 제설차량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제설현황을 파악하고 신속한 제설작업이 가능하도록 함
- UTIS 차량을 활용한 통합노드링크 관리 시스템 구축 : 표준적용 및 관리

사 업 계 획 요약서

사 업 명	무진장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도입사업					
사업유형	생활인프라	사업구분	신규			
추진기관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생활권유형	농어촌생활권			
사업개요	사업 목적	무진장지역 오지마을 주민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고 및 복지향상				
	사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진장 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 및 고령화에 따라 새로운 대중교통시스템 도입이 필요함. ○ 벽·오지 마을 주민의 이동권 보장 등 대중교통서비스 제고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버스업체의 경영수지 개선과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지노선 및 버스 미운행지역에 소형승합차를 활용, 예약에 따라 운행하는 맞춤형 대중교통시스템 도입 ○ 수요응답형교통체계 도입사업 우선 사업 대상지 선정 - 벽지노선이 다수 분포하고, 고령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 ○ 벽지노선 중·대형 버스를 소형승합차로 대체 ○ 차량 소형화로 대중교통서비스 소외지역 제로화 ○ 예약제 운영으로 경제성 및 효율성 증대 ○ 수요응답형교통서비스 시스템 구축, 차량 구입 및 운행, 유지관리 				
	협력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협약에 의한 업무협력 및 업무조정 ○ 자원분담 및 운영 세부계획에 대한 협의 				
세부사업	세부사업1	무진장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도입사업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계	
	국 비	511.7	295.8	295.8	1,103.3	
	지방비	계	127.9	73.9	73.9	275.7
		도비	38.4	22.2	22.2	82.8
		군비	89.5	51.8	51.8	193.1
	민 간					
	계	639.6	369.7	369.7	1,379	

[전주 - 완주] 2015년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 계획서

□ [전주 - 완주] 광역 BIS 사업요약

사업명	2015년도 전주 - 완주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사업																
사업기간	2015년 01월 ~ 2015년 12월 (12개월)																
사업비(원)	지자체	합계(백만원)	국비(비율: 30%)	지방비(비율: 70%)													
	전주시	947	284	663													
	완주군	413	124	289													
	계	1,360	408	952													
사업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적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완주간 광역버스노선 및 대중교통 수요가 높은 지자체 관내 ○ 사업대상 노선 : 총 80 노선 (전주, 완주) 																
사업내용 (구축시스템 위주로 작성)	○ 전주시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사업내용</th> <th>수량</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현장부문</td> <td>정류소안내기(BIT)</td> <td>44 개소</td> </tr> <tr> <td>차량단말기(OBE)</td> <td>402 대</td> </tr> <tr> <td rowspan="2">센터부문</td> <td>센터시스템(H/W,N/W,S/W)</td> <td>1 식</td> </tr> <tr> <td>응용 S/W</td> <td>1 식</td> </tr> </tbody> </table>		사업내용		수량	현장부문	정류소안내기(BIT)	44 개소	차량단말기(OBE)	402 대	센터부문	센터시스템(H/W,N/W,S/W)	1 식	응용 S/W	1 식
	사업내용		수량														
현장부문	정류소안내기(BIT)	44 개소															
	차량단말기(OBE)	402 대															
센터부문	센터시스템(H/W,N/W,S/W)	1 식															
	응용 S/W	1 식															
○ 완주군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사업내용</th> <th>수량</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현장부문</td> <td>정류소안내기(BIT)</td> <td>28 개소</td> </tr> <tr> <td>차량단말기(OBE)</td> <td>00 대</td> </tr> <tr> <td rowspan="2">센터부문</td> <td>센터시스템(H/W,N/W,S/W)</td> <td>1 식</td> </tr> <tr> <td>응용 S/W</td> <td>1 식</td> </tr> </tbody> </table>		사업내용		수량	현장부문	정류소안내기(BIT)	28 개소	차량단말기(OBE)	00 대	센터부문	센터시스템(H/W,N/W,S/W)	1 식	응용 S/W	1 식	
사업내용		수량															
현장부문	정류소안내기(BIT)	28 개소															
	차량단말기(OBE)	00 대															
센터부문	센터시스템(H/W,N/W,S/W)	1 식															
	응용 S/W	1 식															
※ 사업내용 품목 변경가능, 기 구축 BIT 교체사업은 불가																	
BIS 도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시와 완주군은 동일 생활권으로 시내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나, 주요 광역노선 정류소에 설치가 미비하여 설치민원 다수발생 ○ 주요축에 버스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하여 대중교통이용 증진 및 민원해결 ○ 전주시 교통정보센터에서 완주 BIS 통합관리 (예산 절감) 																
BIS 기 구축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시 : 총 273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 전주시 시내버스 정보화 구축사업(1단계) : 104대 - 2006년 전주시 시내버스 정보화 구축사업(2단계) : 32대 - 2011년~2014년 단계별 BIT 확장 사업 : 총 137대 ○ 완주군 : 0개소 																
정보연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시 교통정보센터에서 전주/완주 버스정보시스템 통합운영 ○ 전주시 교통정보센터에서 전주/완주 버스정보시스템을 TAGO연계 																
재원조달 방안 및 집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비 : 자치단체 ITS 국고보조 업무지침에 의거 국고보조금 30%지원 ○ 지방비 : 전주시/완주군 2015년 본예산 반영하여 확보예정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제안서

- 고창군 마을택시 -

I. 사업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대중교통서비스 유형의 다변화 등을 통해 보다 나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에 활력을 창출하고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농어촌버스가 운행하지 않고, 승강장까지의 거리가 먼 고창군 일부 지역은 현재 마을택시를 도입하여 교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승객감소로 불황을 겪고 있는 택시와 버스 등 운수업계의 경영난 해소 도모

나. 추진 경위

- 도로여건 및 버스운행계통 등으로 마을까지 버스가 진입하지 못하여 인근 승강장까지 1km이상 도보로 이동, 버스를 이용하거나 콜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교통약자들의 교통권 보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서 일반택시를 활용한 사업 추진

2. 사업개요

가. 사업명 : 고창군 마을택시

나. 사업시행주체 : 고창군

다. 신청내용

교통서비스	차 종	운행횟수	이용요금	노선형태 및 주요 경유지	면허등록 방식
제공방식	택시	수요응답형	1,000원	마을별 거점지~ 면소재지	해당없음 (택시사업자이용)
이용대상	마을 수			가구 및 인구수	이용객수
	고창군 12개면 26개리 30개 마을			573가구 1,821명	12회/월

라. 추정사업비 : 100백만원

3. 교통 여건

가. 교통 여건 현황

○ 연계교통편 현황

- 농어촌버스는 주요 간선도로만 운행하고 있으며,
- 고창군청 소재지이며 주요거점시설 집적지인 고창읍으로 이동하고자하는 경우 고창군 주요소재지에서 환승하거나 콜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형편임

○ 교통서비스 사업예정지 연결 마을 도로 및 대중교통 현황

-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의 인접한 버스승강장은 농어촌버스 노선이 1일 3회~15회로 다양하게 운행하고 있으나, 최단거리 버스승강장이 1~3.5km정도 떨어져 있고, 고령층이 대다수인 주민들은 버스 승강장까지 대부분 도보로 이동(20~50분정도소요)하고 있어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실정임.

⇒ 마을 안까지 운행이 가능한 교통 서비스 제공 필요

나. 중심지 지역과의 관계

○ 교통서비스 사업대상 지역에서 서비스 거점으로의 이동방법

구분	거리(km)	이동시간(분)	비고
고창군청	4~30	10~40	
면소재지	4~6	10~20	

☞ 해당 마을회관에서 면 소재지로 이동 후 버스를 통한 환승

4. 사업추진 여건

가. 주민참여 상황

□ 교통서비스 제공예정지 주민 의견수렴 현황

- 교통서비스를 원하는 마을 주민은 대다수가 차량이 없고, 고령층인 노약자로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마을 안길에서 목적지까지 교통서비스 제공 요구
- 고창군 5개면 6개리 6개마을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은 현재 마을택시를 시범 운행하고 있고 고창군내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7개면 20개리 24개마을 또한 2015년 4월부터 마을택시를 확대 운행할 계획

나. 사업추진 법규검토

□ 법·제도적 제한사항 현황 및 검토

-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근거, 고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14. 12)
- 고창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한정면허에 관한 조례 제정 검토 중 (2015. 5월 제정 예정)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합의상황

- 관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본 사업예정지는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인·면허를 받은 자가 운행하지 않는 노선을 운행하고,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인 택시사업자가 운행함으로써 여객의 환승으로 각 사업자의 상생도모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우리군 일부지역(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마을택시 시범 운행 중

II. 사업추진 세부계획

1. 차량구입·운행 계획

가. 합리적 운행 계획

- 노선 설정 또는 수요응답형 운행
 - 노선을 설정하지 않고 택시사업자와의 협약에 의한 수요응답형 택시 운행
- 운행횟수 및 시간 등 운행계통 설정
 - 운행횟수 : 일1회, 주3회 운행
 - 마을별 일1회, 주3회(왕복6회)로 사전 협약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
 - 운행 노선도 및 주요 경유지
 - 마을별 거점지 → 버스승강장 → 소재지 읍·면사무소
(1 ~ 3.5km) (3~5km)

나. 적정규모의 차량구입·개조 계획

- 기존차량 (기존 택시사업자)활용
- 택시운임
 - 택시 탑승자의 운임은 운행거리 및 요금에 따라 1회 1,000원으로 하고 초과분은 고창군 지원
- 택시 운행에 따른 요금(운임)지급 : 이용횟수에 따라 읍면장이 집행(군⇒읍면)

2. 유지·관리 계획

가. 시·군 조례 제정 계획

- “고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14. 12)

- “고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한정면허에 관한 조례” 제정 (2015. 5월 예정)

나. 교통서비스 운영 및 관리 계획

- 안전 운행을 위한 안전점검표 마련 및 차량의 일별, 월별 안전점검 시행
- 차량의 효율적인 배차를 위한 월 1회 마을회의 개최 및 배차계획 수립
- 이용요금 : 1대당 1,000원(초과분은 군에서 지원)
- 2015년분 예산(70백만원) 기확보 및 해당소재지 읍면을 통한 지급
- 보조금 청구서류 간소화 및 투명한 집행을 위해 요금정산시스템 도입

Ⅲ. 사업비 투자계획

- 사업초기년도 운임비, 홍보비 등 비용 ₩100백만원(운임비43백만원, 요금정산시스템구축 41백만원, 홍보비2백만원, 기타14백만원)중 국비를 50%지원받아 교통서비스 사업실시하고, 2년차 재원은 지방비 100% 부담 사업추진
- 2015년도 지방비(70백만원) 기확보

Ⅳ. 기대 효과

- 대중교통 사각지역 마을 주민들의 이동편의 증진 도모
- 대중교통서비스의 다양화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버스, 택시)의 경영여건 개선 및 활성화
-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로컬푸드형 생산복지를 위한 고령농가 순환버스 운행 사업 제안서

I. 사업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가. 추진 배경

- 완주로컬푸드 협동조합은 2012년부터 완주군 13개 읍·면 고령농·소농 조직화를 통하여 고령농가의 생산적 복지과 소농의 안정적 소득 창출을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을 현재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매장당 200여명의 고령농이 참여하고 있음
- 특히 완주군의 지형적 특성상 시내버스가 전주시 도심권을 통과해서 이동하는 문제점이 있어 직매장 출하를 위해 2번 이상 환승하여야 하며 배차간격 또한 1~3시간까지 길어 경제활동 증진을 위한 지역차원의 다양한 대안 필요

나. 추진 목적

- 순환버스 운영을 통한 고령농가들의 생산적 복지 차원의 로컬푸드 직매장 편의성을 제고하여, 행복한 농촌생활 보장
-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이후 면단위 주민자치센터, 작은도서관, 금융, 면사무소 등 방문을 통한 행정서비스 만족도와 삶의 질 제고

2. 사업개요

가. 사업명 : 로컬푸드형 생산복지를 위한 순환버스 운행 사업

나. 사업시행주체 : 완주로컬푸드 협동조합

다. 신청내용

	차 종	운행횟수	이용요금	노선형태 및 주요 경유지	면허등록 방식
교통서비스 제공방식	25인승	노선별 정기 3회 총 12회	로컬푸드 판매수수료 1.5%	구이 원백여→구이면→모악직매장 구이 상하보→구이면→모악직매장 이서 대농 →이서면→효자직매장 이서 대문안→이서면→효자직매장	자가용 버스등록
이용대상	마을 수			가구 및 인구수	이용객수
	완주군 구이면 백여리의 2개 읍·면 18개리			총 5,137가구, 12,872명 - 현재 : 633가구 633명 - 확대 : 759가구 759명	30명/일

라. 추정사업비 : 100 백만원

3. 교통 여건

○ 교통 여건 현황

- 전주농수산물시장 ~ 구이 원백여 : 1대 5회, 32.1km
- 전주농수산물시장 ~ 구이 상하보 : 2대 11회, 23.0km
- 전주하나로클럽 ~ 이서 대농 : 2대 11회, 27.4km
- 전주하나로클럽 ~ 이서 대문안 : 1대 5회, 33.2km
- 전주에서 출발하여 운영하는 버스는 완주를 진입하는데 30~40분정도 소요되며 왕복운행하고 있음
- 그러나 버스 배정이 1~2대로 왕복운행하기 때문에 배차간격은 보통 1시간 30분 이상이며 최대 3시간 20분 배차간격으로 운영되고 있음
- 특히 승객이 없는 경우 정류장을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버스가 예정보다 미리 출발하거나 연착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한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음

4. 사업추진 여건

가. 주민참여 상황

□ 교통서비스 제공예정지 주민 의견수렴 현황

구분	문제점	개선요구사항	인터뷰 대상자
구이면 원백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 배차시간이 3시간 간격으로 운행 되기 때문에 한번 놓치면 3시간을 또 기다려야 해서 미리 가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음 • 차로 이동하면 30분거리인데 도보로 이동하려면 3시간이 넘게 걸려 걸어나와서 지나가는 차를 잡아 타는경우도 있음 그런데 무거운 짐이 있을때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임 • 우리 마을까지는 버스가 들어오지 않아 버스를 타려면 정류장까지 20분 정도 걸어가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한 일이 있는 경우 차량 지원 • 우리 마을까지 버스가 왔으면 좋겠다. 	호동마을 신청자
모악산 직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머니들이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농산물을 힘들게 가져오시는 것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오는 버스가 있다면 매장 앞에서 하차가 가능함 	모악점직원 성태훈
이서면 대문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사무소나 로컬푸드 직매장에 갈 때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자가용에 태울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난감할때가 많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사무소를 경유하여 로컬푸드 직매장에 오는 교통편이 있으면 좋겠다. 	대문안마을 이승조
효자동 직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머님들이 물건을 내고 싶은데 교통이 안좋아서 자주 못나오시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깝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마을과 직매장을 직접 연결하는 버스 필요해보임 	효자동직원 임효성

나. 사업추진 법규검토

□ 법·제도적 제한사항 현황 및 검토

구분	검토내용	비고
사업 이용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협동조합기본법 규정을 준수하여 불특정 다수가 아닌 협동조합 조합원의 농산물 순회수집과 교육 목적으로 사용	
요금문제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시 순회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판매수수료의 3%를 받고 있으나 순회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판매수수료의 1.5%를 받아서 순회버스 운영비에 활용	

□ 사업 추진시 발생가능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구분	문제점	해결방안
• 지속적 운영비 마련	• 순환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버스 유지비, 버스 수리비 등 순환버스 운영비가 확보되어야 한다.	• 순환버스를 이용하여 로컬푸드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판매수수료의 1.5%를 받아 운영비로 확보

II. 사업추진 세부계획

1. 차량구입·운영 계획

가. 합리적 운영 계획

○ 노선 설정

- 교통취약자들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환승시간을 없애 중심지역을 경유하여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산물을 출하할수 있도록 노선을 설정하겠음
- 구이 권역 2개노선과 이서 권역 2개노선으로 주3회씩 총 12회 운행

○ 운행횟수 및 시간 등 운행계통 설정

운행횟수		주 3회(월, 수, 금)	
운행시간		35분	
운행계통		구이 원백여 → 구이면사무소 → 모악산 로컬푸드 직매장	
시간		경유지	비고
1-1	06:00	원백여 → 정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걸어나오지 않도록 마을입구에서 승차 • 순회버스 이용여부를 사전에 받아 승차 여부 확인
1-2	06:05	정자리 → 안덕리	
1-3	06:15	안덕리 → 계곡리	
1-4	06:25	계곡리 → 향가리	
1-5	06:30	향가리 → 면사무소	
6	06:35	면사무소 → 로컬푸드직매장	면사무소, 병의원, 보건지소, 농협, 우체국, 식당, 파출소
7		로컬푸드 직매장 도착	

운행횟수		주 3회(화, 목, 토)	
운행시간		45분	
운행계통		이서 대농 → 이서면사무소 → 효자동 로컬푸드 직매장	
시간		경유지	비고
1-1	06:00	대농 → 초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걸어나오지 않도록 마을입구에서 승차 • 순회버스 이용여부를 사전에 받아 승차 여부 확인
1-2	06:15	초남 → 정농	
1-3	06:25	정농 → 면사무소	
4	06:45	면사무소 → 로컬푸드직매장	면사무소, 병의원, 보건지소, 농협, 우체국, 식당, 파출소
5		로컬푸드 직매장 도착	

나. 적정 규모의 차량 구입·개조 계획

- 이용자 수, 도로 현황 등을 고려한 차량 구입·개조
 - 마을안길 도로의 대부분이 폭 3m 미만으로 25인승 차량버스 구입
 - 로컬푸드 출하 농산물 저온 저장 공간 필요시 리모델링

다. 운행 홍보계획

- 운행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배포 및 마을회관에 게재
-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완주군 소식지, 홈페이지 게재 및 읍면별 이장회의시 이장 및 부녀회장에게 공지

2. 유지·관리 계획

가. 교통서비스 운영 및 관리 계획

구분	운영계획	비고
운행일지작성	일별 운행일지 작성	
차량유지보수	월별 차량 정기점검 및 수시관리	지정업체 선정 수시점검 및 체계적인 관리
사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회버스 이용접수 • 불편사항접수 	순회버스 이용에 불편없도록 개선 반영
이용요금	• 로컬푸드 판매수수료의 1.5%	순회버스 운영비로 활용

나. 설문조사 등 모니터링 계획

- 순회버스 이용자 분기별 설문조사 실시
- 개선 및 불편사항 상시 접수

3. 부서간 협업 계획

가. 부서간 사업시행 및 운영을 위한 협의체 구성 계획

- 해당 분야 실과소장 및 읍면장, 민간 참여 협의체 구성
 - 농촌활력과 : 순회버스를 이용하여 생산적 복지 모델 운영
 - 건설교통과 : 업무협조(관련법 및 교통관련)

군산시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구축사업 계획서

사업명	군산시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구축사업																																			
사업기간	2013년 2월 ~ 2013년 12월(11개월)																																			
사업비(백만원)	국비	시비	합계																																	
	2,100	2,100	4,200																																	
기 구축현황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산시ITS 구축 : 군산시 주요도로 전역(56km) - ATMS1차 구축 : 새만금북로(9.8km) - ATMS2차 구축 : 외항로,국가산단지역(9.7km) ○ 총 : 75.5km 																																			
사업구간	○ 서해안고속도로 진출입 지역 및 새만금방조제와 연계한 시내 중심 전지역																																			
사업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품목</th> <th>수량</th> <th>금액(백만원)</th> </tr> </thead> <tbody> <tr> <td>DSRC RSE</td> <td>50식</td> <td>960</td> </tr> <tr> <td>VDS</td> <td>10대</td> <td>160</td> </tr> <tr> <td>VMS</td> <td>10식</td> <td>630</td> </tr> <tr> <td>CCTV</td> <td>7식</td> <td>300</td> </tr> <tr> <td>네트워크카메라</td> <td>10대</td> <td>50</td> </tr> <tr> <td>광통신망(가공)</td> <td>24Km</td> <td>700</td> </tr> <tr> <td>네트워크장비</td> <td>1식</td> <td>300</td> </tr> <tr> <td>센터HW</td> <td>1식</td> <td>400</td> </tr> <tr> <td>센터SW</td> <td>1식</td> <td>300</td> </tr> <tr> <td>설계,감리</td> <td>1식</td> <td>400</td> </tr> </tbody> </table>			품목	수량	금액(백만원)	DSRC RSE	50식	960	VDS	10대	160	VMS	10식	630	CCTV	7식	300	네트워크카메라	10대	50	광통신망(가공)	24Km	700	네트워크장비	1식	300	센터HW	1식	400	센터SW	1식	300	설계,감리	1식	400
	품목	수량	금액(백만원)																																	
DSRC RSE	50식	960																																		
VDS	10대	160																																		
VMS	10식	630																																		
CCTV	7식	300																																		
네트워크카메라	10대	50																																		
광통신망(가공)	24Km	700																																		
네트워크장비	1식	300																																		
센터HW	1식	400																																		
센터SW	1식	300																																		
설계,감리	1식	400																																		
국고지원 필요성	○ 서해안고속도로 진출입 구간과 연계한 시내 중심 지역이 ITS 미구축 상태로 결측구간이 많아 DSRC RSE 를 도입한 교통시스템 고도화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이며, 우리시 재정여건상 국고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재원조달 방안 및 집행계획	○ 2013년 본예산 반영																																			

주) 교통정보 수집·제공구간의 연장을 기준으로 작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 2015.7.7.] [법률 제12973호, 2015.1.6., 일부개정]

국도교통부(교통정책조정과-교통시설투자) 044-201-3789
 국도교통부(교통정책조정과-국가교통위원회) 044-201-3791
 국도교통부(도시광역교통과-연계교통체계) 044-201-3816
 국도교통부(도시광역교통과-복합환승센터) 044-201-3810
 국도교통부(신교통개발과-국가교통기술개발) 044-201-3818
 국도교통부(첨단도로환경과-지능형 교통체계) 044-201-39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해상교통·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4., 2015.1.6.>

1. "교통"이란 사람 또는 화물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행위, 활동, 기능 또는 과정 등을 말한다.
2. "물류"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를 말한다.
3. "교통수단"이란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자전거·자동차·열차·항공기 및 선박 등을 말한다.
4. "교통시설"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철도·공항·항만·터미널 등의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교통수단의 원활한 운영을 보조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5. "공공교통시설"이란 제18호의 공공기관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개발·운영 또는 관리하는 교통시설을 말한다.
6. "교통체계"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교통수단, 교통시설 및 교통운영과 이와 관련된 산업 및 제도를 말한다.
7. "국가기간교통시설"이란 지역 간 간선교통 기능을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시설을 말한다.
 - 가. 「도로법」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 나. 「철도건설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속철도, 광역철도 및 일반철도
 - 다.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 라.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8. "국가기간교통망"이란 국가기간교통시설(國家基幹交通施設)이 서로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신속·안전·편리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한 교통망을 말한다.
9. "교통조사"란 교통과 관련된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집행하고 아울러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운영 실태와 통행량 등에 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0. "교통물류거점"이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대규모 여객 또는 화물의 연계운송·환승·환적(換積)·하역·보관 등 주요 교통물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항·항만·철도역·터미널·산업단지 등 주요 근거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제1종 교통물류거점: 국제교류 및 교역 관련 교통물류활동이나 국내 주요 권역 간 교통물류활동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거점으로서 국가기간교통망과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고시 된 교통물류거점
 - 나. 제2종 교통물류거점: 주로 지역 간 또는 권역 내 교통물류활동이 중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거점으로서 국가기간교통망 또는 지선교통망과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을 국가적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고시 된 교통물류거점

- 다. 제3종 교통물류거점: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것으로서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을 지역적 차원에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고시된 교통물류거점
11. "연계교통시설"이란 주요 교통물류거점 간 또는 교통물류거점과 주변 국가기간교통망 등 간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을 말한다.
12. "환승시설"이란 육상·해상 또는 항공 교통수단의 여객 등의 이용자가 다른 노선이나 다른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차장, 공항여객터미널, 항만대합실, 철도역, 도시철도역, 버스정류소 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13. "환승센터"란 교통수단 간의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일정 환승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갖고 한 장소에 집합되어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주차장형 환승센터: 대중교통 이용자의 주차 및 환승활동 지원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환승센터
- 나. 대중교통 연계수송형 환승센터: 대중교통수단 간의 연계수송 및 환승활동 지원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환승센터
- 다. 터미널형 환승센터: 터미널 및 환승활동 지원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환승센터
14. "환승지원시설"이란 복합환승센터에 설치하는 환승시설 외의 시설로서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필요한 편의시설·상업시설·문화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주거시설 등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15. "복합환승센터"란 열차·항공기·선박·지하철·버스·택시·승용차 등 교통수단 간의 원활한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과 상업·업무 등 사회경제적 활동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승시설 및 환승지원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한 장소에 모여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을 위한 권역 간 대용량 환승교통의 효율적인 처리와 상업·문화·주거·숙박 등 지원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복합환승센터
- 나. 광역복합환승센터: 주로 권역 내의 환승교통 처리와 상업·문화·주거·숙박 등 지원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복합환승센터
- 다. 일반복합환승센터: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것으로서 지역 내의 환승교통 처리를 주된 기능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복합환승센터
16. "지능형교통체계"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하여 전자·제어 및 통신 등 첨단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17. "교통기술"이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개발·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18.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 나. 「지방공기업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 또는 공단 중 교통시설의 개발·운영 또는 관리를 담당하는 공사 또는 공단
-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교통체계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교통시설투자의 효율화 등

제4조(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년 단위로 국가기간교통망에 관한 계획(이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②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 여건의 전망과 교통 수요의 예측
2. 종합적인 교통정책 및 교통시설투자의 방향
3.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의 목표와 단계별 추진전략
4. 국가기간교통시설의 신설·확장 또는 정비사업(이하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연계수송체계
5.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기본 방향과 투자의 개략적인 우선순위
6. 교통기술의 개발 및 활용
7. 국가기간교통망과 다른 나라 교통망 간의 연계운영·개발 및 협력

8. 그 밖에 교통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및 검토에 필요한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계획안을 기초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검토하여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5.1.6.>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②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교통·물류 관련 계획보다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5.1.6.>

③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1. 「도로법」 제5조에 따른 국가도로망종합계획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3.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
4. 「철도건설법」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5. 「항공법」 제89조에 따른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교통·물류 관련 계획

④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계획의 수립 또는 검토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시기 또는 검토시기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교통·물류 관련 계획이나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이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제6조(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서 정한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과, 이와 연계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교통시설의 신설·확장 또는 정비사업(이하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이라 한다)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이하 "중기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중기투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시설의 공급 목표와 투자의 기본 방향
2.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규모, 투자의 우선순위 및 소요 재원
3. 교통시설 간의 적정한 수송 분담구조 및 투자재원 배분의 설정
4.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과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 간의 연계개발
5.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계획
6. 그 밖에 교통시설투자에 필요한 사항

③ 중기투자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④ 중기투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중기투자계획의 집행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기투자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다른 법령에 따른 교통 관련 계획과 해당 기관의 관련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각 계정간의 재원이 중기투자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정부는 중기투자계획에 따라 설정된 교통시설 간 투자재원 배분비율을 관련 예산의 편성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공공기관의 장은 중기투자계획에 포함된 교통시설 개발사업이 민간자본의 유치사업인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과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 간의 연계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8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중기투자계획에 포함된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중기투자계획의 집행 실적 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별 중기투자계획의 집행 실적 및 집행 효과에 대하여 집행 실적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집행 실적 평가보고서를 종합분석하여 중기투자계획의 집행 실적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 결과에 따라 중기투자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육상·해상·항공 교통 분야의 여객과 화물의 원활한 이동성 및 접근성 확보와 사회경제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최적 교통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국가교통물류 경쟁력에 관한 지표(이하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라 한다)를 설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를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교통물류시설의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
 2. 여객 및 화물의 신속한 처리 및 이동성 보장
 3. 여객 및 화물의 접근성 및 편리성 보장
 4. 교통물류산업의 경쟁력 향상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를 설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국가교통물류 경쟁력에 관한 조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물류경쟁력 조사·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와 유사한 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국가교통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중기투자계획 등 국가교통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교통조사(이하 "국가교통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조사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별교통조사의 중복을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교통조사의 시행과 조사 결과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하여 5년 단위로 국가교통조사의 목표 및 전략, 세부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국가교통조사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조사 또는 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교통수단 운행의 일시정지 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교통조사를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자동차 등 교통수단 운행의 일시정지
2. 자동차 등 교통수단에 탄 사람 또는 실은 화물의 현황 조사
3. 교통시설에 대한 출입, 일시 사용 및 교통조사 장비의 설치
4. 교통시설 외 타인 소유의 토지 등을 출입 또는 사용(토지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교통조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4조(정보통신수단 등을 통한 교통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휴대전화 및 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 등 정보통신 수단과 교통요금을 전자적으로 지불·결제하는 카드, 그 밖의 매체(이하 "교통카드"라 한다) 등을 활용하여 교통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휴대전화를 활용한 교통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그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나 교통카드 사업자 등에게 그 이용자들의 시간대별, 기·종점별 통행실태 총량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나 교통카드 사업자 등은 해당 이용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가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교통조사자료를 수집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신상이나 사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기술적 보안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교통조사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조사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조사에 관한 지침(이하 "교통조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조사지침을 작성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교통조사지침의 적용 범위, 작성 방식, 수록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개별교통조사의 협의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교통조사(이하 "개별교통조사"라 한다)를 하려면 교통조사지침에 맞게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계획서(이하 "개별교통조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개별교통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교통조사계획서가 국가교통조사나 그 밖의 다른 교통조사와 중복되는 등 효율적인 교통조사를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공공기관의 장은 개별교통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개별교통조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그 제출시기와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교통조사자료의 종합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조사 및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자료·정보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집·분석·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국가교통조사서를 발행·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자료를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운영할 때에는 조사자료의 적절성, 국가교통조사자료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전문적인 분석을 하고 제5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를 통하여 협의·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공공기관의 장은 교통 관련 정책·계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와 국가교통조사서를 그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를 원활히 구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타당성 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제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는 공공교통시설의 신설·확장 또는 정비사업(이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투자계획 등을 수립하거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2항에 따른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교통 수요, 비용 및 편익 등에 대한 합리적·객관적인 투자 분

석 및 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이하 "투자평가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투자평가지침을 작성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종류·규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9조(타당성 평가서의 제출 등) ①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타당성 평가서(이하 "타당성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에 대한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에 타당성 평가서(사업계획서나 제안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가 타당성 평가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 평가가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 실시 결과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결과 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타당성 평가서의 주요 내용을 관련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 및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주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⑤ 기획재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 실시 결과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결과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자평가지침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통합하여 제정·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3.8.6.>

제20조(재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에 타당성 평가서의 작성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교통 수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는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재평가를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 또는 재평가를 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전문기관의 장은 재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재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1조(타당성 평가의 대행 등) ①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제2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교통 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 등의 전문인력과 평가수행능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평가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능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2조(평가대행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제2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임원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23조(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① 평가대행자는 타당성 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하는 평가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타당성 평가서의 주요 내용을 그 작성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타당성 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타당성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평가대행자는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타당성 평가 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교통조사지침 또는 투자평가지침의 내용과 다르게 교통 수요를 조사·분석하거나 예측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교통 수요를 분석 및 예측할 때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와 국가교통조사서를 그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6. 투자평가지침의 내용과 다르게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폐업신고) 평가대행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5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최근 2년 이내에 두 번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업무정지기간 중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를 위한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2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당성 평가서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3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타당성 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5. 제23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타당성 평가서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타당성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6. 제23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7. 등록 후 2년 이내에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년 이상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6조(등록취소나 업무정지된 평가대행자의 업무 계속) ① 제25조에 따라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평가대행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타당성 평가대행 계약에 한정하여 대행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②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평가대행자가 제1항에 따라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본다.

제27조(타당성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타당성 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8조(보고·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가 적절히 이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대행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에 관한 조사계획을 평가대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 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의 보고 등) ① 평가대행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대행자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한 번 이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0조(교통투자평가협회의 설립) ① 평가대행자 및 교통투자평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통투자평가 관련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교통투자평가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협회의 회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改任)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협회의 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 1. 교통투자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 2. 교통투자평가제도의 인식 향상을 위한 홍보
- 3. 평가대행자의 복리 증진 및 권익 옹호
- 4. 교통투자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32조(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 개발·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육상·해상·항공 교통 분야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를 개발·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3조(특별교통대책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가교통관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 시 교통대책(이하 "특별교통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 2. 설·추석 등 특정 기간 중 교통 수요의 급증
- 3. 그 밖에 교통시설의 파손, 재난의 발생, 에너지 수요·공급의 차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② 특별교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교통 여건의 현황과 전망
 - 2. 교통 수요의 분산대책 및 조정대책
 - 3. 교통수단의 운행 통제, 대체교통수단의 운행, 사업용 교통수단의 증차(增車)·증회(增回) 및 노선 조정
 - 4. 전용차로의 지정·운영, 대체교통로의 지정 등 교통시설 운영개선대책
 - 5. 교통안전대책
 - 6. 그 밖에 특별교통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4조(특별교통대책본부 설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교통대책의 수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특별교통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특별교통대책본부에 소속 직원을 파견하게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5조(긴급사태 시의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교통대책 시행기간에 예상하지 못한 교통 수요의 급격한 증가, 중대한 안전사고 및 재해 발생 등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국가교통관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효과적으로 긴급히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교통수단 또는 교통시설의 관리자, 이용자 및 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대체 교통로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조치
- 2. 여객 및 화물의 긴급운송, 전환운송 및 연계운송 등을 하도록 하는 조치
- 3. 사업용 교통수단의 증차·증회 및 노선 조정
- 4. 그 밖에 긴급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제36조(중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제2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시행 등 전국적 차원의 종합적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중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이하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기본방향
2. 연계교통체계 구축 대상인 각종 개발사업과 교통물류거점의 현황과 전망
3. 연계교통시설사업의 선정 및 투자 우선순위 결정
4. 연계교통체계 구축 소요 재원 및 그 조달 방안
5. 그 밖에 효율적인 연계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효율적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통물류거점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1. 제1종 교통물류거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
2. 제2종 교통물류거점: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고시. 이 경우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제3종 교통물류거점: 시·도지사가 지정·고시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교통물류거점을 지정하는 자(이하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라 한다)는 해당 교통물류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연계교통시설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④ 교통물류거점 및 연계교통시설의 지정·고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수립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시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국가기간교통시설과의 연계 및 교통소통 개선을 위한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이하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1.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2.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중 복합물류터미널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확정한다. 확정된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③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내용 및 수립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의 재원 부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제2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부담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연계교통시설이 원활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는 그 보조분 또는 부담분을 회수할 수 있으며, 다른 연계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제40조(연계교통체계 영향권 설정)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6조에 따라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8조제1항에 따라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개발사업에 따라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연계교통체계에 발생하는 문제점 및 효과 등을 예측·분석하기 위한 영향권역(이하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이라 한다)을 미리 설정하고 그 범위에서 해당 계획 및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의 설정 범위 및 수립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연계교통체계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시설 간 연계·환승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연계교통체계지침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지침에 따라 관련 개발사업, 관련 계획 및 관련 대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2조(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에 따른 도로의 노선 인정)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38조에 따라 수립된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에 따라 건설되는 도로에 대하여는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에서 구분하는 도로의 기능 또는 목적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노선을 인정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3조(국제복합교통망의 구축 지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회경제활동의 세계화 및 육상·해상·항공 교통의 복합서비스 발전 등 여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기간교통망과 외국의 육상·해상·항공 교통망을 체계적·복합적으로 연결하는 국제복합교통망(이하 "국제복합교통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상교통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복합교통망 구축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국제복합교통망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2. 국제복합교통망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인력·정보의 국제교류
3. 국제복합교통망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전시회·세미나의 개최
4. 관련 국가와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교통정책 관련 회의 개최 및 협의기구 설치
5. 국제복합교통망을 활용한 해외시장 개척

6. 그 밖에 국제복합교통망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국가는 국제복합교통망 구축·운영에 참여하는 기관·단체·사업자 등에 대하여 재정·행정·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4조(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환승센터의 체계적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효율적인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위한 추진 방향
2. 주요 연계·환승시설 현황조사 분석
3. 복합환승센터의 기본 개발 방안
4. 복합환승센터의 구축에 따른 개략적인 사업비 추정
5. 그 밖에 복합환승센터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등의 수립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5조제2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및 제50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수립지침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지침 및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6.]

제45조(복합환승센터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교통수단 간 원활한 환승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2. 광역복합환승센터: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일반복합환승센터: 시·도지사가 지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려면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에 관한 계획(이하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광역복합환승센터나 일반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려면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6.>
-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49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복합환승센터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광역복합환승센터 또는 일반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외의 자는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지정한 광역복합환승센터의 지정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⑥ 시·도지사는 광역복합환승센터 또는 일반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정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제3호의 시행자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제8호의 세부 목록을 작성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후에 해당 사항을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복합환승센터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목적
 3.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
 4.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5. 토지 이용계획, 연계교통 관련 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6. 주요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재원의 조달계획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9. 복합환승센터의 용도별 규모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⑧ 제7항제9호에 따른 용도별 규모의 허용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6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복합환승센터 지정권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복합환승센터의 지정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4항, 제48조제3항,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6.>

- ② 복합환승센터로 지정되는 지역에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포함시켜야 한다.
- ③ 지정권자는 제4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후에 같은 항 제3호 및 제8호의 사항을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 다시 제1항에 따라 고시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48조(복합환승센터 지정의 해제 등) ① 복합환승센터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복합환승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50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에 해당 지역에 대한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지정권자는 복합환승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건설 전망이 없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거나 해제된 경우 해당 지정권자는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④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변경·결정된 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같은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용도지역은 변경·결정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이 완료되어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변경·결정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지 아니한다.
-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환원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제49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6.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중 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50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에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완료하지 아니하면 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해당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복합환승센터에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시설의 운영자(이하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라 한다)에게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업시행자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승센터(정보안내시설을 포함한다)의 설계 및 배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에는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절차, 첨부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6.>

제51조(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① 지정권자는 제50조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사항을 변경승인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시·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52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지정권자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 또는 결정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1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4.1.14., 2014.6.3.>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삭제 <2010.4.15.>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및 토지분할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 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석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14.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1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6.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 등의 처리에 관한 허가
18.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의 신고
20.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1.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22.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3.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그 인·허가등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처리기준의 변경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53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위탁시행) 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중 용수시설(用水施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의 건설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54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49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사업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여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제47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고시를 한 때(제4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행자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후에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3항에 따라 고시를 한 때를 말한다)

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복합환승센터 안의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대한 재결(裁決)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복합환승센터 안의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대한 재결은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한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5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 특례) ① 제50조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복합환승센터 안의 토지에 관하여 체결하는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복합환승센터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및 「건축법」 제57조·제6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6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서 정한 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포함하여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7조(토지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 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다른 사람의 토지 출입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제58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①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하기 위한 부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이 고시된 날부터 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하기 위한 부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 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매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 폐지 및 매각,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려는 재산 중 관리청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하거나 처분한다.

제59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제4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시행자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제49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시행자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이 장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거나 양도될 재산의 종류 및 토지의 세부 목록을 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제61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준공인가를 통지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인가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登記原因)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공공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지원) ①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복합환승센터의 원활한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연계교통시설·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61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신청한 경우에 지정권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에 대한 검사는 원칙적으로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후 사업시행자 및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에 관한 검사·인가·신고·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지정·승인·인가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정·승인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지정·승인 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5조제4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1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5. 사정이 변경되어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3조(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지·시설 등을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시설 등의 처분 방법, 절차 및 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 제한) ①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는 환승시설 또는 환승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나 제66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나 복합환승센터의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나 복합환승센터의 관리기관이 매수 신청을 받아 선정된 다른 복합환승센터 입주업체 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양도가격은 취득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하고, 시설 등의 양도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자가 매수한 토지·시설 등의 매각가격, 매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복합환승센터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① 복합환승센터 안에 환승시설 또는 환승지원시설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4.1.14., 2014.6.3.>

1. 「건축법」 제20조제1항·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4.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5.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6.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7.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
9.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의 등록신청
11.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간이저장소설치의 허가
12.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
1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14.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외의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③ 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안에 환승시설 또는 환승지원시설을 건축한 자 또는 제50조제1항의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에 따라 건축허가의 의제를 받고 환승시설 또는 환승지원시설을 건축한 자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검사·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수입시설이나 용기등의 제조시설의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시설의 완성검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같은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3.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에 따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완공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6.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7.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8.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3조에 따른 완성검사
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 시작의 신고
10. 「하수도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처리기준의 변경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65조(복합환승센터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① 복합환승센터 안에 환승시설 또는 환승지원시설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4.1.14., 2014.6.3., 2015.1.28.>

1. 「건축법」 제20조제1항·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4.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5.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6.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 허가
 7.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
 9.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의 등록신청
 11.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간이지장소설치의 허가
 12.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
 1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14.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외의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 ③ 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안에 환승시설 또는 환승지원시설을 건축한 자 또는 제50조제1항의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에 따라 건축허가의 의제를 받고 환승시설 또는 환승지원시설을 건축한 자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검사·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8.>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수입시설이나 용기등의 제조시설의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시설의 완성검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같은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3.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에 따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4.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완공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6.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7.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8.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3조에 따른 완성검사
 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 시작의 신고
 10. 「하수도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처리기준의 변경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시행일 : 2015.7.29.] 제65조

제66조(복합환승센터의 관리기관) ① 복합환승센터는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한 협의회(이하 "입주업체협의회"라 한다)가 관리한다. 다만, 입주업체협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사업시행자가 복합환승센터를 관리할 수 있다.

-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합환승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구로 하여금 복합환승센터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환승센터의 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주업체협의회 및 관리기구의 구성과 운영 및 제3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의 내용 및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복합환승센터관리계획 등) ①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복합환승센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관리할 복합환승센터의 면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 2. 환승시설과 환승지원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복합환승센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②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은 복합환승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로부터 관리비 또는 공동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 ③ 복합환승센터관리계획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조세 등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복합환승센터의 원활한 개발 및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지방세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또는 지방세감면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발부담금 또는 과밀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69조(보고)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복합환승센터의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합환승센터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 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복합환승센터 서비스 기준의 제정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환승센터의 서비스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준(이하 "복합환승센터 서비스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복합환승센터 서비스 기준 설정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71조(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수단 간 원활한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직권으로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재정·행정·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지정의 기준·절차 및 지원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화물의 환적시설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물의 원활한 이동 등 물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적·보관 시설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화물의 환적·보관 시설에 관하여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교통체계의 지능화

제73조(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육상·해상·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이하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목표 및 기본 방향
 2. 교통서비스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3. 육상·해상·항공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4. 지능형교통체계의 연구·개발, 산업화 및 표준화
 5.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재원
 6. 그 밖에 교통 관련 제도의 개선 등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국토교통부장관(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제3호만 해당한다)은 육상·해상·항공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계획(이하 "분야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2. 철도교통 분야
 3. 해상교통 분야(항만을 포함한다)
 4. 항공교통 분야(공항을 포함한다)
- ⑤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⑥ 분야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교통체계계획 수립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및 분야별 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지역에서 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전에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련 교통시설의 관리청, 관계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 분야가 포함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에게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등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도지사에게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안을 제출받으면 해당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이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및 분야별 계획과 맞지 아니하거나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 간의 연계성 및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그 계획안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5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확정·고시하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⑦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의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다른 계획에의 반영)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분야별 계획 및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및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계획과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제76조(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분야별 계획 및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에 따른 소관별 지능형교통체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별 지능형교통체계의 시행계획을 받은 때에는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에 따라 그 내용을 종합·조정하여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이하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에 따라 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① 교통수단과 공공교통시설을 이용하여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운영하고 활용하는 사업(이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시행한다.

1.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에 따라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조·기능·설계·구축·운영 및 유지보수 등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에 관한 지침(이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시행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에 따라야 한다.
- ③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의 제정·개정 및 내용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79조(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①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아닌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제3항에 따라 협의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절차, 실시계획의 고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등) ①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가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79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5.31., 2011.4.14., 2014.1.14.>

1.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共同溝)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굴착공사를 위한 점용은 제외한다)
3.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철도시설의 점용허가
4. 「항만법」 제30조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신고
5. 「항공법」 제75조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7.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8.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및 협의
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 ②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아닌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인·허가등의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처리기준의 변경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81조(준공검사) ①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아닌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에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를 받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은 준공검사를 한 후 그 사업이 제79조에 따라 승인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아닌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받은 때에는 제80조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에 관한 검사·인가·신고 및 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④ 준공검사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의 호환성 및 연동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표준(이하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이라 한다)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표준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표준
 3.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전기통신의 표준
 4. 「전파법」 제63조에 따른 전파이용 기술의 표준
- ②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제정·고시하면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 외의 자에게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사용하게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장비를 제조하도록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⑤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시행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⑥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준수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3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고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장비·제품 및 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을 하기 위하여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장비·제품 및 서비스 등을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가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표준인증기관의 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산정한 수수료를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제4항에 따라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장비·제품이나 관련 문서 등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⑥ 제4항에 따른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해당 장비·제품이나 관련 문서 등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장비·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장비·제품 및 서비스 등을 수거·반품 및 중지하게 하거나, 인증표시를 제거하게 하거나, 해당 인증을 받은 후에 그 표시를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⑧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⑨ 표준인증기관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84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3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장비·제품 및 서비스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 2. 시판품 등에 대한 조사 결과 인증 장비·제품 및 서비스가 인증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경우
- 3. 폐업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5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 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5.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비, 제품 또는 서비스가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②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업무계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86조(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 및 신뢰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장비, 시스템, 서비스의 성능 및 신뢰도 등을 평가하는 기준(이하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기준을 제정·고시한 경우에는 장비·시스템 및 서비스가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이하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를 한 결과 구축·운영 중인 장비·시스템 및 서비스가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이하 "성능평가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⑤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업무를 성능평가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⑥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신뢰도 평가에 관한 절차·방법, 성능평가전담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지능형교통체계의 안전관리)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능형교통체계를 철거·이전하거나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교통정보를 위작(僞作)·변작(變作)하거나 위작·변작된 교통정보기록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교통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8조(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간 교통안내 등 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육상·해상·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전국 차원의 교통정보(이하 "전

국단위교통정보"라 한다)를 개발하고, 종합적·체계적으로 수집·분석 및 관리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소관 업무와 관련된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정보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고, 이를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가 수집한 교통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보의 수집·가공 및 제공 등을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교통정보사업자"라 한다)에게 소관 교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교통정보를 교통정보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 분야에만 해당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은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개발된 교통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보급하고 그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교통정보의 제공, 보급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89조(민간 참여 및 해외 진출의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육상·해상·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를 개발·운영할 때에는 민간의 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운영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 분야에만 해당한다)은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교류, 홍보 및 조사, 기술 및 정책자문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1.6.>

[법률 제12973호(2015.1.6.)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4항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90조(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의 구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8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상·항공 교통 분야 전국단위교통정보의 수집·분석·관리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교통정보의 보급·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이하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국단위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관리 및 제공하기 위하여 육상·해상·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권역 차원의 교통정보를 수집·분석·관리 및 제공하는 권역별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이하 "권역교통정보센터"라 한다)를 구축·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권역교통정보센터는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와 교통정보를 상호 연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자가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소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정보를 수집·분석·관리 및 제공하기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이하 "지역교통정보센터"라 한다)를 구축·운영하는 경우에는 권역교통정보센터 또는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와 교통정보를 상호 연계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의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 간 교통정보의 연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 권역교통정보센터, 지역교통정보센터의 구축·운영 및 교통정보의 연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의 설립) ①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육상·해상·항공 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지능형교통체계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협회의 회원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2조(협회의 사업)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연구
- 2.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인식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홍보·교육
- 3.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기술동향 조사 및 국제협력
- 4.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연구개발 및 사업관리
- 5. 지능형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 경비의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교통기술의 진흥

제93조(교통기술정보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교통기술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94조(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국가교통기술의 개발계획(이하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교통기술의 개발 방향과 목표
 - 2. 교통기술의 국내외 환경 분석
 - 3. 중장기 중점 기술개발 전략
 - 4. 교통기술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투자계획 및 자원 확보 방안
 - 5. 교통기술인력의 수요·공급 및 육성 방안
 - 6. 개발된 교통기술의 실용화 등 교통기술의 보급·활용방안
 - 7. 교통기술개발 관련 연구기관 등의 지원방안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 1.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
 - 2. 「건설기술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 ④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받으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계획안을 기초로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확정된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한 후에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95조(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에 따라 소관별 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별 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이를 종합·조정한 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관별 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과 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교통기술의 표준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의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이용자가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통기술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표준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표준
3.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전기통신의 표준
4. 「전파법」 제63조에 따른 전파이용 기술의 표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에 관한 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교통기술 관련 사업자에게 교통기술에 관한 표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장비를 제조하도록 요청·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97조(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교통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또는 교육·훈련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98조(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분야별 교통기술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3.23.>

1. 국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교통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항상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교통 관련 연구를 하는 법인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협약을 맺어 그 기관으로 하여금 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제2항에 따른 기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과 그 밖에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제2항에 따른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이 담당하는 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조사·분석 및 평가(이하 "평가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2항에 따른 분야별 전담기관은 평가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등을 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분야별 전담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야별 전담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 연구·개발과제의 범위와 수행방법, 협약의 체결방법 및 내용 등
2. 제2항에 따른 분야별 전담기관이 담당할 업무의 범위,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
3.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관리 등
4. 제4항에 따른 평가등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제99조(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법인·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연구개발비를 사용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임직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6. 연구개발의 자료나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 연구 부정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참여 제한을 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인·단체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행위별 참여 제한기간의 구체적 기준과 제2항에 따른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교통기술인력의 관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기술인력의 관리와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01조(교통기술개발의 국제교류협력)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개발의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교통기술개발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교통기술개발을 위한 인력·정보의 국제교류
3. 외국의 대학·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공동 기술개발
4. 개발된 교통기술을 이용한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2조(교통신기술의 지정·보호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교통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개량한 기술이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기술을 국가교통체계에 보급·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을 새로운 교통기술(이하 "교통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통신기술의 실용화 등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에 대하여 교통신기술에 대한 기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자가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교통신기술의 지정, 보호 내용, 기술 사용료, 보호기간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교통신기술 지정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통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해당 교통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교통기술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제104조(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된 교통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기술의 시범보급사업, 시범지역조성사업, 시범도시 지정 등의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행정·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05조(연구개발 투자 등의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교통기술의 연구·개발에 투자하게 하거나 제98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출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장 국가교통위원회

제106조(국가교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국가교통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 등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교통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교통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국가교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중기투자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집행 실적 평가
3.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재원 확보
4.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계획의 수립 및 변경
5.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 설정
6.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7.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 및 변경
8. 제1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변경
9.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0.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광역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내용 중 중요 사항의 변경
11.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수립 및 변경
12.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3.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및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14. 교통체계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1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교통체계지능화사업 또는 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시범사업을 포함한다) 등 국가교통정책의 종합조정
16.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17. 그 밖에 교통체계에 관한 국가의 중요 정책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07조(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교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된다. <개정 2013.3.23.>

③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1.6.>

1. 당연직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2. 위촉직 위원: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④ 삭제 <2015.1.6.>

제108조(국가교통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국가교통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분야별 국가교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조정
2. 국가교통위원회가 그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제109조(국가교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교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0조(지방교통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소관 주요 교통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교통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111조(국민 등의 의견 수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통계획 등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교통계획 또는 교통정책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국토교통부장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교통계획 및 교통정책
2. 해양수산부장관: 해상분야의 교통계획 및 교통정책

제11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25조제1항에 따라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제6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정·승인 또는 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3. 제84조에 따라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4. 제85조제1항에 따라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5. 제103조에 따라 교통신기술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제113조(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등 금지)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수단 등을 통한 교통조사 업무, 제18조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 업무나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지정·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8장 벌칙

제115조(벌칙) 제11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를 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자
3. 제23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타당성 평가서의 주요 내용을 해당 타당성 평가서 작성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평가서를 작성한 평가대행자
4. 제23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타당성 평가서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평가대행자
5. 제23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와 국가교통조사서를 교통 수요의 분석 및 예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지 아니한 평가대행자
6.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후 새로 타당성 평가대행 계약을 체결한 자

제1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3조제1항에 따른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3조제2항에 따른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3. 제83조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를 표시한 장비·제품을 판매 또는 진열·홍보한 자
4. 제83조제7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85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
6.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능형교통체계를 철거·이전하거나 파손한 자
7. 제87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시행자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교통정보를 위작·변작하거나 위작·변작된 교통정보 기록을 행사한 자

제1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1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자
4.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시설을 처분한 자

제1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타당성 평가 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평가대행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조사를 거부한 자

제12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재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제83조제2항에 따른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에서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12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5조부터 제11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2조(과태료) ① 제23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타당성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평가대행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당성 평가서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조사지침 또는 투자평가지침의 내용과 다르게 교통 수요를 조사·분석하거나 예측한 평가대행자
4. 제23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투자평가지침의 내용과 다르게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한 평가대행자
5.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정·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자
2.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방해·거부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부칙 <제9763호, 2009.6.9.> (산림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법률 제9772호 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3호 및 제80조제1항제7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림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를 각각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로 한다.

⑦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9772호, 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을 해당 법령에 따라 개발·시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사단법인 아이티에스 코리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아이티에스 코리아[ITS Korea(Intelligent Transport Society of Korea)](이하 "사단법인"이라 한다)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로써 그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제9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단법인은 제9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해산되는 사단법인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제9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가 포괄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에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의 명의로는 제9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의 명의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통시설"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조의2에 따라 수립된 박람회 특별교통대책"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3조에 따라 수립된 박람회 특별교통대책"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조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으로 한다.

②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등 심의)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5조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③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전단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로 한다.

④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전단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로 한다.

제15조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으로 한다.

⑤ 법률 제9607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전단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로 한다.

⑥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부목을 수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에 따른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광역복합환승센터 및 일반복합환승센터

⑦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후단 및 제9조제1항 후단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의 국가교통조사"를 각각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에 따른 국가교통조사"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통체계효율화법」"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으로 한다.

⑧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제시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제60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4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제지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

⑩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제시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⑪ 법률 제9547호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⑫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시설투자계획 및 동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및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으로 한다.

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3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	복합환승센터
-----	---------------------	--------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통체계효율화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272호, 2010.4.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⑦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10303호, 2010.5.17.> (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⑨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0331호, 2010.5.31.> (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3호 및 제80조제1항제7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각각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⑫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0445호, 2011.3.9.>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④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제10599호, 2011.4.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65조제1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75조제2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80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⑫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1020호, 2011.8.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5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④부터 <25>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1708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물류거점의 지정·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정하려고 공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713호, 2013.3.23.> (과학기술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6항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⑤부터 <28>까지 생략

부칙 <제11794호, 2013.5.22.> (건설기술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⑦부터 <25>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2014호, 2013.8.6.>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46호, 2014.1.14.> (건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20조제1항·제2항"을 "「건축법」 제20조제1항·제3항"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2248호, 2014.1.14.> (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가목 중 "「도로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를 "「도로법」 제10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5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제65조제1항제5호 및 제80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각각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18>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738호, 2014.6.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9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0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⑬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2960호, 2015.1.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각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2973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 수립하는 복합

환승센터개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재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립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제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유효기간) 제8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토론

토론

사회(좌장)

김원철 책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토론자

김명수 교수, 한밭대학교

김성호 담당관, 충청남도 도로교통과

김형철 책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충남 교통체계진흥화사업 발전방향 세미나」 토론문

(한밭대학교 김명수 교수)

1. 충청도에서도 5년 단위 ITS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각 지자체(기초자치단체)의 기본틀과 운영방안, 관리방안,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광역권 (인근 광역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등)와 협력하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 고려 (예, 대전시+세종시+청주시 : ATMS, UTIS)
3. 충남은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와 협력하여 연계방안을 추진할 수 있는 행정 절차 이행 방안 수립이 필요
4. DRT 사업도 충남 당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자체적으로 시행해 보았으므로 충청도와 당진시가 국토교통부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국비 확보 방안 필요
5. 각 지자체의 버스, 택시 지원체계를 DRT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함
6. 광역 BIS 구축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충청도와 각 기초자치단체 협력이 필요함

「충남 교통체계진흥화사업 발전방향 세미나」 토론문

(충청남도 도로교통과 김성호 주무관)

- 국토부에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함
 - 법제도가 명확하지 않아 시군 담당자가 사업 추진시 어려움(예, 수요응답형교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택시사업자에게 한정면허를 부여해야 하는지 고민 많음)

- 공주 KTX 역 이용인원 너무 없어서 활성화 추진에 어려움 많음.
역 활성화를 위한 개발사업 발굴과 중앙정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개발 의지가 필요함

- 공주-세종간 광역BIS 사업이 시행 예정임. 공주시의 경우 현재 충남 버스에 장착되어 사용중인 버스카드 단말기와의 호환성을 검토하여 활용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장래 충남 시군에서도 BIS 사업을 추진할 때 충남 시군과의 통합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구성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충남 교통체계진흥화사업 발전방향 세미나」 토론문

(충남연구원 김형철 책임연구원)

1. 과거 충남도는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후 변화된 지역환경을 반영한 수정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특히, 과거 계획에서는 C-ITS 계획이 없으므로 이를 반영한 장래 계획이 필요함. 도 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려야 함. 특히, 기본적인 방향, 재정계획, 정보 통합관리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함
2. 미래는 정보시대로 첨단교통DB가 중요한 회계머니가 될 것임. 충남도는 이러한 준비과정이 필요함. 광역시에서는 교통정보센터를 갖추고 정보화 작업을 해왔으나, 충남도는 이러한 부분에서 준비가 없음. 아쉬운 부분으로 판단됨
3. SOC 건설사업이 과거의 트렌드였음. 최근 정부예산 추세를 보면 알 수 있음. 앞으로는 운영/관리/서비스를 강화하는 신 트렌트 개발이 필요함. 이를 반영하여 국비 확보를 위한 활동이 요구됨

질의응답

감사합니다!